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사퇴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14243
----------	-------

발의연월일 : 2022. 1. 3.

발 의 자 : 김기현 · 강기윤 · 강대식
강민국 · 구자근 · 권명호
권성동 · 권영세 · 김도읍
김미애 · 金炳旭 · 김상훈
김석기 · 김선교 · 김성원
김승수 · 김영식 · 김예지
김용관 · 김 용 · 김은혜
김정재 · 김태호 · 김태흠
김형동 · 김희곤 · 김희국
류성걸 · 박대수 · 박대출
박성민 · 박성중 · 박수영
박완수 · 박 진 · 박형수
배준영 · 배현진 · 백종현
서범수 · 서병수 · 서일준
서정숙 · 성일종 · 송석준
송언석 · 신원식 · 안병길
양금희 · 엄태영 · 유경준
유상범 · 유의동 · 윤두현
윤상현 · 윤영석 · 윤재옥
윤주경 · 윤창현 · 윤한홍
이달곤 · 이만희 · 이명수
이양수 · 이 영 · 이 용
이용호 · 이종배 · 이종성

이주환 · 이채익 · 이철규
이현승 · 임이자 · 장제원
전봉민 · 전주혜 · 정경희
정동만 · 정운천 · 정점식
정진석 · 정찬민 · 정희용
조경태 · 조명희 · 조수진
조태용 · 조해진 · 주호영
지성호 · 최승재 · 최춘식
최형두 · 추경호 · 태영호
하영제 · 하태경 · 한기호
한무경 · 허은아 · 홍문표
홍석준 · 홍준표 · 황보승희
의원(105인)

주 문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공수처장”이라고 함)은 독립 수사기관의 장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와 공정한 수사 의무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고 함) 수사 대상범위에는 속하지 않지만 공수처의 수사와 문재인 정권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온 야당 정치인, 언론인 및 민간인과 관련하여 그 활동을 감시 및 탄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1. 5월경부터 11월경에 수백 회에 걸쳐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인 통신자료 조취를 실시하는 등 야당 정치인, 언론인 및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이라는 범죄행위를 자행하였음.

또한 공수처장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겨냥한 표적 수사, 같은 당 소속 김웅 의원에 대한 불법 압수수색 처분, 손준성 검사에 대한 인권침해적 위법·과잉 수사 및 여운국 공수처 차장검사와 여당 대통령선거 캠프 소속 국회의원과의 접촉 등 정치 편향 수사와 대선 개입 행위를 지속하였음.

이는 수사기관에 부여된 직무권한과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와 공정한 수사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언론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과 자유 등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국가의 민주적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반헌법적 범죄행위임.

이에 김진욱 공수처장의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및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을 강력히 규탄하며, 더 이상 독립 수사기관의 장으로서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바, 헌정질서 유린의 책임을 지고 공수처장직에서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함.

제안이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공수처장”이라 함) 김진욱 사퇴 촉구 결의안의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음.

첫째, 김진욱 공수처장은 2021. 8월경부터 10월경에 걸쳐 국민의힘 소속 전체 국회의원 105명의 83%를 초과하는 88명, 보좌진 10여 명,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와 그 배우자 및 여동생, 윤석열 후보자

캠프 소속 정치인 수 명 등 최소 100여 명에 이르는 야당 정치인에 대하여 통신자료 조회를 실시함(2022. 1. 3. 기준).

특히 당시 공수처가 수사중인 윤석열 후보 사건 5건의 발생 시기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재임 기간인 2019. 7. 25.부터 2021. 3. 4. 이전임이 분명하나, 이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 공수처 수사의 대상범위에 속하지 아니한 야당 정치인과 대통령 후보자의 가족에 대하여 통신 조회가 이뤄진 것임.

또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88명에 대한 공수처의 통신 조회는 당내 대선후보 최종 경선일자인 2021. 10. 8. 및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 감사(공수처 대상) 일자인 2021. 10. 12.에 전후하여 2021. 10. 1.(소속 의원 32명), 5일(소속 의원 17명) 및 13일(소속 의원 41명) 등 3일간에 집중적으로 실시된 바, 이는 결국 공수처가 조회 대상자를 분명하게 인지하면서 공수처에 비판적인 야당 의원들의 신원을 파악하고 야당 대선에 개입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행한 표적 사찰임.

둘째, 김진욱 공수처장은 2021. 5월경부터 11월경에 걸쳐 22개 언론사에 소속된 언론인 160여 명에 대하여 통신자료 조회를 실시한 바(2021. 12. 30. 기준),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80여명은 공수처 수사에 비판적인 보도를 한 바 있는 특정 언론사 소속이었고, 2명은 공수처를 취재한 바 전혀 없는 외신기자였음.

특히 일부 언론사의 경우 법조출입기자, 법조팀장, 사건데스크, 사회부장 등으로 이어지는 취재 보고라인 전체를 조회하고, 일부 기자들에

대해서는 통신영장 발부를 통해 통신사실(통화내역)을 확인한 정황이 드러남.

이는 공수처에 비판적인 보도의 보도 경위와 취재원 색출을 목적인 언론 사찰로서, 취재원 보호라는 언론의 기본 윤리를 위반하고 국민의 알권리 및 권력 비판 보도를 위축시키는 등 언론 자유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헌법적 범죄행위임.

셋째, 김진욱 공수처장은 2021. 7월경부터 10월경에 걸쳐서 민간인 40여 명에 대하여 통신자료 조취를 실시한 바 있고, 이 중에는 공수처 또는 문재인 정권에 비판적인 견해를 표시하여 온 시민단체 대표 2명, 학계 인사 24명, 보수성향 청년단체 인사 6명 등이 포함되어 있음 (2021. 12. 30. 기준).

이는 공수처 수사의 대상범위에 속하지 않는 민간인을 감시한 민간 사찰 행위로서, 사생활 및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민주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반헌법적인 범죄행위임.

넷째, 김진욱 공수처장은 검사 등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근거하여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특정인의 통신자료를 받는 경우 ‘수사’를 목적으로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 이내에서 자료를 요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수처 수사 대상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수사 개시 대상이 되지 아니한 정치인, 언론인 및 민간인에 대하여 KT 등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통신자료를 제공하도록 하여,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수사권한 이외의 행위를 함으로써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행위를 하였음.

결국, 김진욱 공수처장은 독립 수사기관의 장으로서 공수처에 속한 검사 등을 지휘·총괄할 책임은 물론 정치적 중립 의무와 공정한 수사 의무 등 헌법을 준수할 의무를 지님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수사권한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여 정치인에 대하여 표적 사찰과 대선개입 행위를 하고 공수처와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인과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는 등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만행을 저질렀으므로 자진 사퇴는 물론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임. 이에 김기현 국회의원 등 105인은 헌정수호의 차원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이 공수처장직에서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